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1.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방법 및 인정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「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)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동 개정고시는 "우리 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개정 고시등"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* 전문 : 우리 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고시훈령예규 > 고시전문

붙임 : 일부개정고시 및 고시 전문 각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본부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, 보건복지부,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장, 임상시험실시기관장 등

주무관 강은빈 사무관 김희선 임상정책과장 전결 2021. 11. 29.
김정미

협조자

시행 임상정책과-6127

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
/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1854

팩스번호 043-719-1850

/ gnvinga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